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54호 2020. 8. 24(월)

고 시

○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----- 2

공 고

○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----- 3

회람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고시 제 2020-234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4일

목 포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:

종전의 주소	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의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달동 1336-25	허사로81번길 37	직권	09.11.23.	허사도 인근 매립지 내 도로임.
달동 1332	고하도길 8	신청	09.11.23.	지명사용.
연산동 662-2	대양로 36	직권	09.11.23.	법정동인 대양동을 지나가는 도로임.

※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8. 2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목포시 공고 제 2020 - 1302호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4일

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- 「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 시행에 따른 회계 관직 등을 지정하여 관리와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(안 제2조)

- 징수관·재무관 : 환경수도사업단장
- 분임징수관·분임재무관 : 자원순환과장
- 지출원 : 청소행정팀장
- 수입금출납원 : 자원재활용팀장

- 나.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는 사항 규정함(안 제3조)

3. 관계법령

-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4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규칙(안) : 붙임

6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8. 24. ~ 2020. 9. 14.(21일간)

7. 의견제출

- 이 규칙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자원순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- 라. 제출서식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[우58724]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(남교동),
트윈스타행정타운 4층 자원순환과

8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(☎061-270-3656, FAX 27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징수관·재무관 : 환경수도사업단장
2. 분임징수관·분임재무관 : 자원순환과장
3. 지출원 : 청소행정팀장
4. 수입금출납원 : 자원재활용팀장

제3조(준용)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